#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355

발의연월일: 2024. 8. 29.

발 의 자:차규근・이해민・서왕진

조 국・김준형・김재원

김선민 • 박은정 • 강경숙

신장식 • 황운하 • 정춘생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고자 함.

이에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면서 변경되는 수사 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수사절차법」을 제정함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장 수사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검사의 수사권한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

3346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 ① 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 ④ 제1항 단서의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제8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제8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

분 중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84조(관할 수사기관의 장에 대한 수사촉탁)

제1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영장의 집행)

제106조의2(압수·수색의 심리)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하여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司法警察官吏"를 "사법경찰관리"로 한다.

제123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법원은 제122조 단서에 정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통지의 예외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제123조, 제129조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집행에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⑤ 검사,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⑥ 법원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에

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설명하는 등 압수·수색의 전 과정에서 그들의 참여권을 실 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檢事, 司法警察官吏"를 "사법경찰관리"로 한다.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제13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부분 중"檢事,司法警察官吏"를 "사법경찰관리"로 한다.

제138조(준용규정)

제195조 앞의 "第1章 搜査"를 삭제한다.

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 ·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 제198조 · 제198조의2 · 제199조 · 제200조 · 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 · 제201조 · 제201조의2 · 제202조 · 제203조 · 제203조의2 · 제204조 · 제205조 · 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 · 제213조의2 · 제214조 · 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 · 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 · 제218조의2 · 제219조부터 제221조과지 · 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 · 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 · 제243조의2 · 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 ·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60조제1항 본문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찰청법」 제10조에"를 "「공소청법」 제31조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방검찰청검사

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61조의 제목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62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를 "심문의 결과 및 증거조사의 결과에 따라"로,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를 "결정을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2항제1호의"를 "제3항제1호의"로, "제2항제2호의"를 "제3항제2호의"로 하며, 같은 항후단 중 "제2항제1호의"를 "제3항제1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원은 재정신청에 대하여 항고의 절차에 따라 재정신청인이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⑥ 법원은 제3항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 결정을 하는 경우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유지를 담당할 자를 변호사 중에서 지정하여야한다.
- ⑦ 제6항의 지정을 받은 변호사는 해당 사건과 이와 병합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검사로서의 모든 직권을 행사한다.

- ⑧ 제7항에 의하여 검사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간주한다. 이 경우 지정된 변호사는 국가로부 터 법률로써 정한 액의 보수를 받는다.
- ⑨ 법원은 지정을 받은 변호사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제31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第221條의2의 規定에"를 "「수사절차법」 제46조에"로 한다.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제41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부분 중 "제243조의2에"를 "「수사절차법」 제35조에"로, "所屬檢察廳"을 "소속공소청"으로 한다.

제417조(동전)

제41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제418조(준항고의 방식 등)

② 법원은 준항고에 대하여 준항고인이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2항의 심문기일을 마친 후 2주 내에 준항고 인용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第81條(拘束令狀의 執行) ① 拘束 令狀은 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司法警察官吏가 執行한다. 但, 急速을 要하는 境遇에는 裁判 長, 受命法官 또는 受託判事가 그 執行을 指揮 할 수 있다.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 구속 영장은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 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 찰관리·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 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 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 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執行을 命할 수 있다. 이 境遇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執行에 關하여 必要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輔助를 要求할 수 있으며 管轄區域外에서도 執行할 수 있다.

③ (생략)

<신 설>

<u><삭 제></u>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1항 단서의 법원사무관등

第83條(管轄區域 外에서의 拘束 令狀의 執行과 ユ 囑託)① 檢 事는 必要에 依하여 管轄區域 外에서 拘束令狀의 執行을 指 揮할 수 있고 또는 當該 管轄 區域의 檢事에게 執行指揮를 囑託할 수 있다.

② (생략)

第84條(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제84조(관할 수사기관의 장에 대 지방검찰청검사장에 對한 搜査 囑託)被告人의 現在地가 分明 하지 아니한 때에는 裁判長은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 찰청검사장에게 그 搜査와 拘 東令狀의 執行을 囑託할 수 있 다.

<신 설>

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 · 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 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 서도 집행할 수 있다.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 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①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한 수사촉탁) -----관할 수사기관의 장-----

제106조의2(압수 · 수색의 심리)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하여 압 수 · 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第115條(令狀의 執行)① 押收・搜索令狀은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司法警察官吏執行한다.但, 必要한 境遇에는裁判長은법원사무관등에게그 執行을命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① ~ ③ (생 략) <<u>신 설></u>

<u><신 설></u>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 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심문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115조(영장의 집행) ① -----

\_\_\_\_

----사법경찰관리-----

\_\_\_\_\_

-----.

② (현행과 같음)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원은 제122조 단서에 정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통지의 예외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제123조, 제129조에 규정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검사,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신 설>

第137條(拘束令狀執行과 搜索) 檢事,司法警察官吏 또는 第81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법원사무관등이 拘束令狀을 執行할 境遇에 必要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他人의 住居,看守者있는 家屋,建造物,航空機,船車內에들어가 被告人을 搜索할 수 있다.

第138條(準用規定) 第119條, 第12

0條, 第123條와 第127條의 規定

은 前條의 規定에 依한 檢事,

司法警察官吏, 법원사무관등의 경찰관리-----

• 수색을 할 때에는 피고인, 변 호인 또는 피압수자에게 전자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 를 설명하는 등 압수・수색의 전 과정에서 그들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사 법경찰관리-----제138조(준용규정)-----

⑥ 법원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

체등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

자정보"라 한다)에 대한 압수

搜索에 準用한다.

第1章 搜查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 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 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 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 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 <삭 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 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 거를 수사한다.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 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 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 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 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 할 수 있다.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 <삭 제> 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 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

<삭 제>

- 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 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 야 한다.
-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 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 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 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 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 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 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

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 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 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 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 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 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시정 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 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

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 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 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 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 ⑦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 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 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 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 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다.
- ⑧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 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 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 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① 검사 | <삭 제> 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 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법 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 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 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 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제198조(준수사항)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u>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u> 소사기과의 수사 주이 시

①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第198條의2(檢事의 逮捕・拘束場所監察) ① 地方檢察廳 檢事長 또는 支廳長은 不法逮捕・拘束의 有無를 調査하기 爲하여 檢事로 하여금 每月 1回 以上 管下搜査官署의 被疑者의 逮捕・拘束場所를 監察하게 하여야한다. 監察하는 檢事는 逮捕 또는 拘束된 者를 審問하고 關聯書類를 調査하여야한다.

② 檢事는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 逮捕 또는 拘束된 것이라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 境遇에는 즉시 逮捕 또는 拘束된 者를 釋放하거나 事件을 檢察에 送致할 것을

命하여야 한다.

第199條(搜査와 必要한 調査) ①

搜査에 關하여는 그 目的을 達
成하기 爲하여 必要한 調査를
할 수 있다. 다만, 强制處分은
이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
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
다.

② 搜查에 關하여는 公務所 其他 公私團體에 照會하여 必要한 事項의 報告를 要求할 수있다.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 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第200條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 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第200條의 規 定에 의한 出席要求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 려가 있는 때에는 檢事는 관할 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逮 捕令狀을 발부 받아 被疑者를 <삭 제>

<삭 제>

逮捕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 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의 逮捕 수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 捕할 수 있다. 다만, 多額 50萬 원이하의 罰金,拘留 또는 科料 에 해당하는 事件에 관하여는 被疑者가 일정한 住居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第 200條의 規定에 의한 출석요구 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 다.

- ② 第1項의 請求를 받은 地方 法院判事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逮捕令狀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逮捕의 필요가 인 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③ 第1項의 請求를 받은 地方 法院判事가 逮捕令狀을 발부하 지 아니할 때에는 請求書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署名 捺印하여 請求한 檢事에게 교 부한다.
- ④ 檢事가 第1項의 請求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犯罪事實에

에 逮捕令狀을 請求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逮捕令狀을 請求하는 취 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逮捕한 被疑者를 拘束하고 자 할 때에는 逮捕한 때부터 4 8時間이내에 第201條의 規定에 의하여 拘束令狀을 請求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拘束令狀을 請求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被 疑者를 즉시 釋放하여야 한다. 第200條의3(緊急逮捕) ① 檢事 또 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가 死 刑・無期 또는 長期 3年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에 해당하는 罪 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地方法院判事의 逮捕令狀을 받 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令狀없이 被疑者를 逮 捕할 수 있다. 이 경우 緊急을 요한다 함은 被疑者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逮捕令

관하여 그 被疑者에 대하여 전

狀을 받을 時間的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 려가 있는 때
-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 ② 司法警察官이 第1項의 規定 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 경 우에는 즉시 檢事의 承認을 얻 어야 한다.
- ③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第 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 경우에는 즉시 緊急逮 捕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緊急 逮捕書에는 犯罪事實의 要旨, 緊急逮捕의 事由등을 記載하여 야 한다.

第200條의4(緊急逮捕와 令狀請求 期間) ① 檢事 또는 司法警察 官이 第200條의3의 規定에 의 하여 被疑者를 逮捕한 경우 被 疑者를 拘束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檢事는 관할地方法 院判事에게 拘束令狀을 請求하 여야 하고, 司法警察官은 檢事

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에게 拘束令 狀을 請求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 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拘束令狀을 請求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被疑者 를 즉시 釋放하여야 한다.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釋 放된 者는 令狀없이는 동일한 犯罪事實에 관하여 逮捕하지 못한다.
- ④ 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 <u>적사항</u>

- 2.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 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 3. 석방의 일시·장소 및 사유
-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 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 ⑤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 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 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 거나 등사할 수 있다.
- ⑥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 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第200條의6(準用規定) 제75조,第
 81條第1項 本文 및 第3項,第82
 條,第83條,第85條第1項・第3
 項 및 第4項, 제86조, 제87조,

<u><</u>삭 제>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 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 2항 단서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逮捕하 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拘束"은 이를 "逮捕"로, "拘束令狀"은 이를 "逮捕令狀" 으로 본다.

第201條(拘束) ① 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 한 理由가 있고 第70條第1項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을 때에는 檢事는 管轄地方 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拘束令 狀을 받아 被疑者를 拘束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管轄 地方法院判事의 拘束令狀을 받 아 被疑者를 拘束할 수 있다. 다만, 多額 50萬원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該當하는 犯 罪에 關하여는 被疑者가 一定 한 住居가 없는 境遇에 限한다. ② 拘束令狀의 請求에는 拘束 의 必要를 認定할 수 있는 資 料를 提出하여야 한다.

- ③ 第1項의 請求를 받은 地方 法院判事는 신속히 拘束令狀의 발부여부를 決定하여야 한다.
- ④ 第1項의 請求를 받은 地方 法院判事는 相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拘束令狀을 發付한다. 이를 發付하지 아니할 때에는 請求書에 그 趣旨 및 理由를 記載하고 署名捺印하여 請求한 檢事에게 交付한다.
- ⑤ 檢事가 第1項의 請求를 함에 있어서 同一한 犯罪事實에 關하여 그 被疑者에 對하여 前에 拘束令狀을 請求하거나 發付받은 事實이 있을 때에는 다시 拘束令狀을 請求하는 趣旨 및 理由를 記載하여야 한다.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 ④ 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 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 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 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⑦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⑧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⑨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다시 선정할 수 있다
- ⑩ 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 제1항·제3항·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 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 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 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第202條(司法警察官의 拘束期間)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拘束한 때에는 10日 以內에 被疑者를 檢事에게 引致하지 아니하면 釋放하여야 한다.

第203條(檢事의 拘束期間) 檢事가 | <삭 제> 被疑者를 拘束한 때 또는 司法 警察官으로부터 被疑者의 引致 를 받은 때에는 10日以內에 公 訴를 提起하지 아니하면 釋放 하여야 한다.

第203條의2(拘束其間에의 算入) <삭 제> 被疑者가 第200條의2・第200條 의3ㆍ제201조의2제2항 또는 第 2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逮捕 또는 拘引된 경우에는 第202條 또는 第203條의 拘束期間은 被

疑者를 逮捕 또는 拘引한 날부 터 起算한다.

第204條(令狀發付外 法院에 對한 | <삭 제> 통지) 逮捕令狀 또는 拘束令狀 의 發付를 받은 後 被疑者를 逮捕 또는 拘束하지 아니하거 나 逮捕 또는 拘束한 被疑者를 釋放한 때에는 遲滯없이 檢事 는 令狀을 發付한 法院에 그 事由를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한다.

第205條(拘束期間의 延長) ① 地 方法院判事는 檢事의 申請에 依하여 搜查를 繼續함에 相當 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한 때에 는 10日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限度에서 第203條의 拘束期間 의 延長을 1次에 限하여 許可 할 수 있다.

② 前項의 申請에는 拘束期間 의 延長의 必要를 認定할 수 있는 資料를 提出하여야 한다.

第208條(再拘束의 制限)①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에 依하여 拘 束되었다가 釋放된 者는 다른 重要한 證據를 發見한 境遇를

<삭 제>

除外하고는 同一한 犯罪事實에 關하여 再次 拘束하지 못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는 1個의 目 的을 爲하여 同時 또는 手段結 果의 關係에서 行하여진 行爲 는 同一한 犯罪事實로 看做한 다.

제209조(준용규정)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 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 (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第210條(司法警察官吏의 管轄區 域 外의 搜査)司法警察官吏가 管轄區域外에서 搜査하거나 管 轄區域 外의 司法警察官吏의 囑託을 받어 搜査할 때에는 管 轄地方檢察廳檢事長 또는 支廳 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다만, 第200條의3,第212條,第214條, 第216條와 第217條의 規定에

<삭 제>

依한 搜查를 하는 境遇에 緊急을 要할 때에는 事後에 報告할수 있다.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 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 을 때
-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 <u>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u> <u>할 때</u>

第212條(現行犯人의 逮捕) 現行犯人은 누구든지 令狀없이 逮捕할 수 있다.

第213條(逮捕된 現行犯人의 引渡)

①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 아 닌 者가 現行犯人을 逮捕한 때 <삭 제>

<u><삭 제></u>

에는 卽時 檢事 또는 司法警察 官吏에게 引渡하여야 한다.

② 司法警察官吏가 現行犯人의 引渡를 받은 때에는 逮捕者의 姓名, 住居, 逮捕의 事由를 물 어야 하고 必要한 때에는 逮捕 者에 對하여 警察官署에 同行 함을 要求할 수 있다.

第213條의2(準用規定) 제87조, 제 | <삭 제> 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가 現行犯人 을 逮捕하거나 現行犯人을 引 渡받은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214條(輕微事件과 現行犯人의 | 逮捕) 多額 50萬원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該當하는 罪 의 現行犯人에 對하여는 犯人 의 住居가 分明하지 아니한 때 에 限하여 第212條 내지 第213 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214條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 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 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 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삭 제>

- 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 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 청구한 때
-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

   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

   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

   백한 때
- ②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 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 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 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 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 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 각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

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 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 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 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 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이유가 있는 때
-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민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 는 때

-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 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 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 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 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 ③ 검사·변호인·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 33조를 준용한다.
- ① 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 ①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

항까지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 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 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 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 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 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 ·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 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①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 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 6항을 준용한다.

第214條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삭 제> 제한) ① 제214조의2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 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 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 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 ②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 방된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 나 구속할 수 없다.
- 1. 도망한 때
- 2.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 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 4.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

   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 第214條의4(保證金의 沒收) ① 法 院은 다음 各 號의 1의 경우에 職權 또는 檢事의 請求에 의하 여 決定으로 제214조의2제5항 에 따라 納入된 保證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沒收할 수 있다.
  - 1.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釋放된 者를 第214條의3第2項에설거된 사유로 再次 拘束할때

- 2. 公訴가 제기된 후 法院이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釋放된者를 동일한 犯罪事實에 관하여 再次 拘束할 때
- ② 法院은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釋放된 者가 동일한 犯罪事實에 관하여 刑의 宣告를 받고 기위한 召喚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도망한 때에는 職權 또는 檢事의 請求에 의하여 決定으로 保證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沒收하여야 한다.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검증을할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

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 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第216條(令狀에 依하지 아니한 <삭 제> 强制處分) ① 檢事 또는 司法 警察官은 第200條의2・第200條 의3・第201條 또는 第2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 또는 拘束하는 경우에 必要한 때에는 令狀없이 다음 處分을 할 수 있다.

- 1. 他人의 住居나 他人이 看守 하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內에서의 被疑者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 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 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 2. 逮捕現場에서의 押收, 搜索, 檢證
- ② 前項第2號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告人에 對한 拘束令狀의 執行의 境遇 에 準用한다.

③ 犯行 中 또는 犯行直後의 犯罪 場所에서 緊急을 要하여 法院判事의 令狀을 받을 수 없 는 때에는 令狀없이 押收, 搜索 또는 檢證을 할 수 있다. 이 境 遇에는 事後에 遲滯없이 令狀 을 받아야 한다.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 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 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 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

<u><삭 제></u>

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 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 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 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第218條(令狀에 依하지 아니한 押收)檢事,司法警察官은被疑 者 其他人의 遺留한 物件이나 所有者,所持者 또는 保管者가 任意로 提出한 物件을 令狀없 이 押收할 수 있다.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u><삭 제></u>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 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 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 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 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 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 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第219條(準用規定) 第106條, 第10 | <삭 제> 7條. 第109條 乃至 第112條. 第 114條, 第115條第1項 本文, 第2 項,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第140條, 第1 41條, 第333條第2項, 第486條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 의 本章의 規定에 依한 押收, 搜索 또는 檢證에 準用한다. 但,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 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處分 을 함에는 檢事의 指揮를 받아 야 한다.

第220條(要急處分) 第216條의 規 定에 依한 處分을 하는 境遇에

急速을 要하는 때에는 第123條 第2項,第125條의 規定에 依함 을 要하지 아니한다.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삭 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 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 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 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 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 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 다.
- ③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 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第221條의2(證人訊問의 請求) ① 犯罪의 搜査에 없어서는 아니 될 事實을 안다고 明白히 認定 되는 者가 前條의 規定에 依한 出席 또는 陳述을 拒否한 境遇 에는 檢事는 第1回 公判期日 前에 限하여 判事에게 그에 對 한 證人訊問을 請求할 수 있다.

- ② <u>삭제</u>
- ③ 제1항의 請求를 함에는 書 面으로 그 事由를 疏明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請求를 받은 判事 는 證人訊問에 關하여 法院 또 는 裁判長과 同一한 權限이 있 다.
- ⑤ 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중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중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⑥ 判事는 제1항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遲滯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第221條의3(鑑定의 委囑과 鑑定留置의 請求) ① 檢事는 第221條의 規定에 依하여 鑑定을 委囑하는 境遇에 第172條第3項의留置處分이 必要할 때에는 判事에게 이를 請求하여야 한다.② 判事는 第1項의 請求가 相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留置

處分을 하여야 한다. 第172條 및 第172條의2의 規定은 이 境 遇에 準用한다.

第221條의4(鑑定에 必要한 處分, <삭 제> 許可狀) ① 第221條의 規定에 依하여 鑑定의 委囑을 받은 者 는 判事의 許可를 얻어 第173 條第1項에 規定된 處分을 할 수 있다.

- ② 第1項의 許可의 請求는 檢 事가 하여야 한다.
- ③ 判事는 第2項의 請求가 相 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許可 狀을 發付하여야 한다.
- ④ 第173條第2項・第3項 및 第 5項의 規定은 第3項의 許可狀 에 準用하다.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 의)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 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 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 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 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 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 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무부령으로 정한다.
- 第222條(變死者의 檢視) ① 變死 者 또는 變死의 疑心있는 死體 가 있는 때에는 그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檢察廳檢事가 檢 視하여야 한다.
  - ② 前項의 檢視로 犯罪의 嫌疑 를 認定하고 緊急을 要할 때에 는 令狀없이 檢證할 수 있다.
  - ③ 檢事는 司法警察官에게 前2 項의 處分을 命할 수 있다.

第223條(告訴權者) 犯罪로 因한 <삭 제> 被害者는 告訴할 수 있다.

第224條(告訴의 制限) 自己 또는 | <삭 제> 配偶者의 直系尊屬을 告訴하지 못한다.

第225條(非被害者인 告訴權者) ① 被害者의 法定代理人은 獨立하 여 告訴할 수 있다.

② 被害者가 死亡한 때에는 그 配偶者, 直系親族 또는 兄弟姉 妹는 告訴할 수 있다. 但, 被害 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지 못 한다.

第226條(同前) 被害者의 法定代理 人이 被疑者이거나 法定代理人 의 親族이 被疑者인 때에는 被 害者의 親族은 獨立하여 告訴 할 수 있다.

第227條(同前) 死者의 名譽를 毀 損한 犯罪에 對하여는 그 親族 또는 子孫은 告訴할 수 있다.

第228條(告訴權者의 指定) 親告罪 에 對하여 告訴할 者가 없는 境遇에 利害關係人의 申請이 있으면 檢事는 10日以內에 告 訴할 수 있는 者를 指定하여야

<삭 제>

<삭 제>

<삭 제>

한다.

第229條(配偶者의 告訴) ① 「형 법」 第241條의 境遇에는 婚姻 이 解消되거나 離婚訴訟을 提 起한 後가 아니면 告訴할 수 없다.

② 前項의 境遇에 다시 婚姻을 하거나 離婚訴訟을 取下한 때 에는 告訴는 取消된 것으로 看 做한다.

第230條(告訴期間) ① 親告罪에 對하여는 犯人을 알게 된 날로 부터 6月을 經過하면 告訴하지 못한다. 但, 告訴할 수 없는 不 可抗力의 事由가 있는 때에는 그 事由가 없어진 날로부터 起 算한다.

第231條(數人의 告訴權者) 告訴할 수 있는 者가 數人인 境遇에는 1人의 期間의 懈怠는 他人의 告訴에 影響이 없다.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삭 제〉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삭 제>

<삭 제>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 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 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 과 제2항을 준용한다.

第233條(告訴의 不可分) 親告罪의 | <삭 제> 共犯 中 그 1人 또는 數人에 對한 告訴 또는 그 取消는 다 른 共犯者에 對하여도 效力이 <u>있</u>다.

第234條(告發) ① 누구든지 犯罪 | 가 있다고 思料하는 때에는 告 發할 수 있다.

② 公務員은 그 職務를 行함에 있어 犯罪가 있다고 思料하는 때에는 告發하여야 한다.

第235條(告發의 制限) 第224條의 | <삭 제> 規定은 告發에 準用한다.

第236條(代理告訴) 告訴 또는 ユ 取消는 代理人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

第237條(告訴, 告發의 方式) ① 告訴 또는 告發은 書面 또는 口述로써 檢事 또는 司法警察 官에게 하여야 한다.

②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口

<삭 제>

<삭 제>

述에 依한 告訴 또는 告發을 받은 때에는 調書를 作成하여 야 하다.

第238條(告訴, 告發과 司法警察官 | <삭 제> 의 措置) 司法警察官이 告訴 또는 告發을 받은 때에는 迅速 히 調査하여 關係書類와 證據 物을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 다.

第239條(準用規定) 前2條의 規定 은 告訴 또는 告發의 取消에 關하여 準用한다.

第240條(自首와 準用規定) 第237 | <삭 제> 條와 第238條의 規定은 自首에 對하여 準用한다.

第241條(被疑者訊問) 檢事 또는 |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訊問함 에는 먼저 그 姓名, 年齡, 등록 기준지, 住居와 職業을 물어 被 疑者임에 틀림없음을 確認하여 야 한다.

第242條(被疑者訊問事項) 檢事 또 | <삭 제> 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에 對 하여 犯罪事實과 情狀에 關한 必要事項을 訊問하여야 하며 그 利益되는 事實을 陳述할 機

<u><삭</u> 제>

會를 주어야 한다.

第243條(被疑者訊問斗 參與者) 檢上 事가 被疑者를 訊問함에는 檢 察廳搜查官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參與하게 하여야 하고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訊問함 에는 司法警察官吏를 參與하게 하여야 한다.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 <삭 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 자 또는 그 변호인 · 법정대리 인 •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 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 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 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 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 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 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 <<u>삭 제></u>

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 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 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第244條(被疑者訊問調書의 作成)

- ① 被疑者의 陳述은 調書에 記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

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 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③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서명하게 한다.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 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 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 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 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 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 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 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 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 <삭 제> 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u>한</u>다.

-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 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는 것
-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 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 다는 것
-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 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 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 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 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

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 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② 제244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 하여 준용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 용한다.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

<삭 제>

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소리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 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 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第245條(參考人과의 對質)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事實을 發 見함에 必要한 때에는 被疑者 와 다른 被疑者 또는 被疑者 아닌 者와 對質하게 할 수 있 다.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 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

<u><</u>삭 제>

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 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 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 을 수 있다.

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도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① 제2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검사는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

- ②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

<u><삭 제></u>

- 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는 수 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 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 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법무부렁으로 정한 다.

제245조의4(준용규정) 제279조의7 및 제279조의8은 검사의 전문 수사자문위원에게 준용한다.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 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 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 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다.

-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삭 제>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 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 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 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 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 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삭 제>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 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ㅣ 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 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 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 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 하여야 한다.

제245조의9(검찰청 직원) ① 검찰 〈삭 제〉 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②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 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 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 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의 수사를 보조하 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 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 는다.
-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 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 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 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 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 다.
- ⑥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 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 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 제260조(재정신청) ① 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 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 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 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 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 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세200조(세정신정) ①
<u>지방공소청</u>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3.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 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u>지방검찰청검사장</u>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 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④ (생 략)

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제260조제3항에 따라 재 정신청서를 제출받은 <u>지방검찰</u> <u>청검사장</u> 또는 지청장은 재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2
「공소청법」 제31조에
1. ~ 3. (현행과 같음)
③
<u>지방공소청장</u>
④ (현행과 같음)
제261조( <u>지방공소청장</u> 등의 처리)
지방공소
 청장
<del></del>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다.

1. • 2. (생 략)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 (생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 (현행과 략)

<신 설>

- ②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 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 사할 수 있다.
- 1. 2. (생략)
- ③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 <삭 제>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④ 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④ 제3항제1호의-----

<u>지방공소청장</u>

- 1.•2. (현행과 같음)
- 같음)
  - ② 법원은 재정신청에 대하여 항고의 절차에 따라 재정신청 인이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 을 열어야 하고, 증거를 조사하 여야 한다.
- <u>③</u> -----심문의 결과 및 증 거조사의 결과에 따라----------결정을 한다. <후단 삭제>
- 1. 2. (현행과 같음)

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 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 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 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 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 ⑤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 ⑥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 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신 설>

제3항제2호의
<u>제3항제1호의</u>
⑤
<u>지방공소</u>
<u>청장</u>
<u>제3항</u>
<u>\\</u>
<u> 방공소청장</u>
<u>방공소청장</u>
<u>방공소청장</u>
  ⑥ 법원은 제3항제2호에 따라
 ⑥ 법원은 제3항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 결정을 하는 경우 그

① 제6항의 지정을 받은 변호 사는 해당 사건과 이와 병합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 <신 설>

<신 설>

第311條(法院 또는 法官의 調書) 公判準備 또는 公判期日에 被 告人이나 被告人 아닌 者의 陳 述을 記載한 調書와 法院 또는 法官의 檢證의 結果를 記載한 調書는 證據로 할 수 있다. 第1 84條 및 第221條의2의 規定에 依하여 作成한 調書도 또한 같 다.

第417條(同前)檢事 또는 司法警저察官의 拘禁, 押收 또는 押收物의 還付에 關한 처분과 제243

까지 검사로서의 모든 직권을 행사한다. ⑧ 제7항에 의하여 검사의 직 무를 행하는 변호사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간주한다. 이 경우 지정된 변호 사는 국가로부터 법률로써 정한 액의 보수를 받는다.

⑨ 법원은 지정을 받은 변호사 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311조(법원	<u> </u> 노는	법관의	<u> 조서)</u>
	「수시	-정차번	· <sub>i</sub> 제4
6조에		_	· · ·
<u> </u>			
∄417조(동전)	•		
川 <u>コエイユー( 0 代 )</u>	<u>′</u> . – – – –		

조의2에따른변호인의참여등에관한처분에對하여不服이있으면그職務執行地의管轄法院또는檢事의所屬檢察廳에對應한法院에그처분의취소또는변경을청구할수있다.

第418條(準抗告의 方式)(생 략) | ス

<u><신 설></u>

<신 설>

<u>절차법」 제35조에</u>
<u>소속</u>
공소청
제418조(준항고의 방식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법원은 준항고에 대하여 준
항고인이 참석할 수 있는 심문
기일을 열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2항의 심문기일을
마친 후 2주 내에 준항고 인용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